

1. 개정이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내압용기에 대한 검사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안 제77조의2)

-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선팅검사 신설(안 제80조,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추가

다. 재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근거 명확화(안 제81조)

- 현행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

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수소내압용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방법 도입(안 별표 5의8)

- 내압용기 결함여부를 주로 육안 검사방법으로 위주로 검사하던 것을 초음파 탐상기, 결함검출카메라, 전자장치진단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용기 내부결함까지 검사토록 하고, 수소가스는 화재시에도 무색 불꽃 특성상 폭발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및 강제환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마. 수소가스누출감지기 및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 완화(안 별표 12)

-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도록 한 수소가스누출감지기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수소가스누출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만을 나타내는 장비도 사용가능토록 허용하고, 이동식 검사장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특성상 검사소에 설치되는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자 함

바.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에 수소 내압용기 포함(안 별표 15, 별표 26)

-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전기차 튜닝 또는 정비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소 내압용기의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

- 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도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정비를 포함시키고자 함
- 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77조, 별제
제34호의10서식, 제34호의12서식, 제34호의14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에 따른 조문변경사항 및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명칭 및 CI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내압용기 장착검사 처
리기간을 장비제작사로의 출장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즉시→3
일)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을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호부터 제20호”를 “제19호부터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이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 미충족

제8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표 5의8 제1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5)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 (5)) 중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 탐상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부식의 일반부식의 검사기준란 중 “15%”를 “15% 미만이고 부식의 넓이가 용기면적의 25%”로 하고, 같은 호에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료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5의4, 별표5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계통의 화재를 감지 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감지하고 강제 환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검사한다.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	고압차단밸브 및 수소가스 용기밸브, 수소 가스 누출감지센서, 용기센서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밸브 및 센서의 작동상태를 전자장치진단기로 확인
--------------------	---	----------------------------

별표 12 제1호나목(2)(다)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평을 유지하는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레일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표 12 제1호다목(2)(가)3) 중 “:”를 “: 답판(이동식 검사장비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나)3) 중 “(롤러구동형은)”을 “(롤러구동형 및 이동식 검사장비는)”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2)(나) 중 “순차적으

로 연속된 데이터”를 “판정기준값 초과여부”로, “LED바”를 “LED, 점멸 등”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창유리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풍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별표 15 제2호나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창유리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풍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별표 15 제3호나목 중 “내압용기 중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로”를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거나”로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 · 기구의 절연저항시험기란 다음에 검사용 기계 · 기구의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1대 이상
----------------	-------

별표 26 제2호의 제한되는 작업 범위란 기호(○) 중 “LPG 가스용기 및 용기”를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0서식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2서식 중 “



”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4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별표5의8 제1호나목 (4)(중전의(5)) 및 (5)의 개정규정, 별표5의8 제2호 중 수소전기차 밸프장치 및 센서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개정규정, 별표15 제2호가목 16) 및 나목 16)의 개정규정, 별표16 및 별표18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	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	-----		
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	-----		
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	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	-----		
한 것으로 본다.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	3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	3. -----제94조제		
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	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		
자동차에 한정한다)		서-----		
②·③ (생략)		-----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
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략)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 17. (생략)

<신 설>

-----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
 -----.

1. ~ 3. (현행과 같음)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9호부터 제21호

1. ~ 17. (현행과 같음)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18. ~ 20. (생략) ③ ~ ⑥ (생략) 제81조(재검사) ① ~ ③ (생략) <u><신설></u>	<u>성과 기준에 관한 규칙」</u> <u>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u> <u>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u> <u>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u> <u>율 허용기준 미달</u> 19. ~ 21. (현행 제18호부터 제 20호까지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재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u> <u>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u> <u>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u> <u>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u> <u>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u> <u>는 제외한다) 또는 재검사기간</u> <u>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u> <u>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u> <u>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u> <u>않은 것으로 본다.</u>
--	---